

사업시행권 등 포기각서

랑대부 주식회사 귀중

(이상 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에 명시된 대주를 말하며, 대출약정상의 대주의 지위 및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 양도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을 말함)

본 사업시행권 등 포기각서(이하 “**본 포기각서**”)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0-9 번지(이하 “**본건 사업부지**”) 빌라 재건축사업(이하 “**본건 사업**”)에 관한 신축 공사의 공사비 일부 금융자금 조달과 관련하여, 차주로서 주식회사 두정(이하 “**차주**”), 대주로서 랑대부 주식회사(이하 “**대주**”), 시공사 겸 조건부채무인수인으로서 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(이하 “**시공사**”라 하고, 차주·시공사를 총칭하여 “**각서인(들)**”이라 합니다) 등 사이에 2018년 9월 14일자로 체결된 대출약정[이하 “**대출약정(서)**”이라 하며,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한다]과 관련됩니다.

본 포기각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본 포기각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대출약정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.

각서인들은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.

- (1) 대출약정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주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(이하 “**포기사유**”), 각서인들은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권(차주 및 시공사가 본건 사업의 시행자 지위에서 보유하는 인·허가권자로서의 지위와 권리 등 제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합니다, 이하 “**사업시행권**”) 및 본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시공사가 보유하는 유치권의 행사를 포기하여 대주로부터 지정 받는 자(이하 “**사업인수인**”)에게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이고, 이와 관련하여 사업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, 지위, 의무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.

1. 본건 사업 관련 각종 인·허가상의 권리

는 경우 각서인들은 지체 없이 동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할 것입니다. 또한, 본 포기각서 등과 관련하여 각서인들의 인감증명서 등 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 전까지 각서인들은 새로운 인감증명서의 교부 등 해당 서류의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

- (7) 아울러, 본 포기각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, 첨부 양식에 의거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,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대주에게 제출하고, 차후 새로운 사업주체와 건축주를 정하여 위 동의서에 보충 기재할 권한을 취소불능 조건으로 대주에게 부여합니다.
- (8) 본 포기각서에 따른 각서인들의 사업시행권 등 권리의 포기는 대출약정의 모든 당사자 및 위 각 당사자들의 포괄 또는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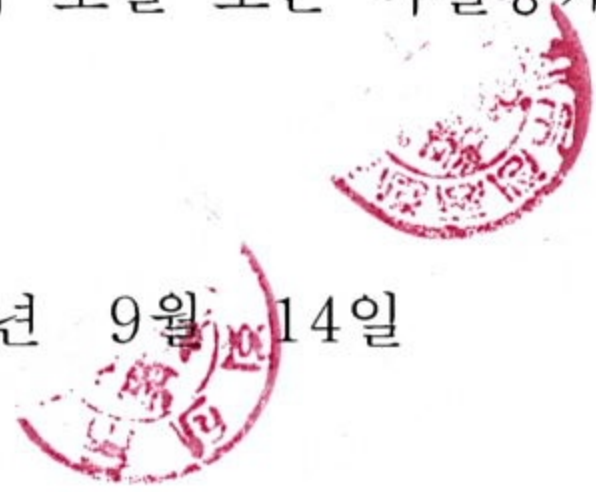
2018년 9월 14일

각서인

주식회사 두정

서울 송파구

대표이사 우



각서인

주식회사 두정종합건설

서울 송파구

대표이사 임

